

2006년도 시민감사관 운영실적 공표

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제7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06년도 시민감사관 운영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운영실적 총괄(2006.1.1 ~ 12.31)

접수 및 처리

(단위 : 건수)

구 분	청 구			처 리		
	계	주민감사	시민감사	계	완 료	진 행 중
계	11	7	4	11	10	1

※ 시민감사청구

-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 서울시 업무 중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20세 이상 시민 2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및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의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가 시민감사관에게 감사청구

※ 주민감사청구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도봉구는 100인 이상, 그 외 자치구는 200인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감사청구

□ 감사결과 조치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권고	제도개선	계	추징	환불	계	고발	징계	훈계등
25	19	6			-	10	-	1	9

□ 분야별 감사청구 현황

계	도시교통	건축주택	토목건설	공공시설	환경	재무정	일반정	기타
11	2	5	-	1	1	2	-	-

※ 시민감사관 운영실적(2006.12.31 현재)

구분	계	'96~'99	'00	'01	'02	'03	'04	'05	'06
계	106	40	9	9	10	10	9	8	11
주민감사	24	-	-	2	1	5	4	5	7
시민감사	소계	82	40	9	7	9	5	5	4
	시민청구	40	22	4	5	1	1	3	3
	시장의뢰	14	5	4	2	1	1	-	1
	직권발의	28	13	1	-	7	3	2	2

2. 감사청구 내용

구분	청구일시	청구인	대상기관	청 구 내 용	감사기간	비 고
주민 감사	'06. 2.17	000외 262명	00구	◦ 00구 00동 00아파트내 체육시 설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	'06.3.16 취하	완료
"	'06. 2.24	000외 243명	00구	◦ 00구의회 예산집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	'06.4.24 ~4.28	완료
"	'06. 3.24	000외 210명	00구	◦ 00구 00동 00재건축사업 관련 한 주민감사청구	'06.6.23 취하	완료
"	'06. 4.26	000외 268명	00구	◦ 00구 00동 제2-1구역 주택재개 발정비구역 변경 관련한 주민감사청구	'06.8.16 각하	완료
"	'06. 7.25	000외 296명	00구	◦ 00구 00단지 아파트재건축 관련 주민감사청구	'06.11.6 ~11.15	완료
"	'06.8. 31	000외 234명	00구	◦ 00구 00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	'06.10.24 각하	완료
"	'06.10 .11	000외 266명	00구	◦ 00구 공영주차장 민간자본유치사 업 관련 주민감사청구		진행중
시민 감사	'06. 1.19	000 구청장	00본부	◦ 00구 소재 사유지 매각 관련한 시 민감사청구	'06.2.6 ~2.10	완료
"	'06. 3.13	000외 285명	서울시	◦ 00유통단지 종교시설 배정 관련 감사청구	'06.4.5 각하	완료
"	'06. 4.7	000외 243명	00과	◦ 00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련 시민감 사청구	'06.5.15 ~5.19	완료
"	'06.7. 19	000외 354명	00과	◦ 서울시 불법주차 견인사업 관련 감사청구	'06.8.24 ~8.30	완료

3. 주요 제도개선 사항

① 건축허가 전 주민의견 청취제도 시행

- 건축허가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인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적법성과 신중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 또한, 적법한 건축허가도 건축공사 및 건축물 축조에 따른 이해관계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에게 허가 행위에 대한 공지가 필요하여
- 건축허가 전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전 주민의견 청취제도’ 기준을 마련하여 전 자치구에 시행토록 주택국 건축과에 통보

▶ **시 단위 건축허가 전 주민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 기준 마련 및 자치구에 시달토록 통보 (2006. 3. 21 주택국 건축과)**

②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표방안 검토

- 서울시 조례 제7조는 행정정보의 공표를 집행기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어 지방의회인 서울시의회의 행정정보에 대한 공표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회 자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예산집행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7조가 정하고 있는 공표대상 사무에 서울시의회 예산 및 결산,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포함하도록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검토)
- 각 자치구에 대하여는 행정정보공개 사무 중 청구가 없어도 공개하는 공표대상 행정정보제도를 시행하도록 조례의 제정 또는 규칙 개정권고

▶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표방안을 검토조치토록 통보(2006. 6. 9 행정국 시민협력과)**

③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 운영에 관한 법령 등 개정 검토

-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별표2]에 의거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 00주민지원협의체 위원 8명 중 00구의회 의원 2인의 활동이 미진하고 지방의회의 선정 기능이 주민들의 정치적 행동에 의하여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 동 협의체는 의무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가 없음.
- 동법 시행령 [별표2]와 ‘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등 조례’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이 배치되고 있어 동법시행령 제18조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2]의 지원협의체의 구성 방법을 소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원협의체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선발한 주민대표로 하는 내용으로 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 운영관련 법령을 개정 건의토록 통보

④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 검토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신상변동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주민지원협의체가 영향권지역 주민의 대표기구이나 설치 기관과의 관계 설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고 파행적 운영에 대하여 통제할 제도가 없어,
- 사업의 원활성 제고와 영향권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의 의사 수렴이 용이 하도록 동 협의체 구성·운영과 위원의 위·해촉 및 주민감시요원의 복무, 수탁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관련조례의 개정 검토

▶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 검토 통보

⑤ 민간위탁운영사업 민간위탁비 지급 방법 개선

- 서울특별시 00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협약서 제10조에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에도,
- 00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중 정산비의 지급은 협약서 제9조에 의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한 후 이를 서울시가 검토 후 위탁비를 지급 하고 있으며,
- 수탁기관의 대금결재 지급 방법도 위탁운영비를 채권자에게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고 있어 거래 시 수수료 비용이 지급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금을 일정 회기로 정하여 선 지급 하며, 수탁기관에 회기별로 집행정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토록 하고 연말 최종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 위탁비 관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지정 계좌로 수령, 지급하고 이자는 년도말 정산 시 반납토록 하고, 수탁금 지급 시 일괄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등 수탁금 관리 회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거래은행과 협약을 체결토록 통보

▶ 민간위탁운영사업 민간위탁비 지급 방법을 개선토록 통보

⑥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견인조치사항 관한 법령 개정(건의)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을 실시하면서 견인 대상차량 표시(스티커)의 서식이 각 자치구 마다 다르게 사용되어 시민 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견인 시 『견인대상차량 표시』 및 견인 시 견인취지와 그 차의 『보관 장소 표시』 서식을 통일 하는 방안 마련토록 통보

▶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등 검토 통보

4. 감사청구사항별 처리내역

주민감사청구사항 처리 - 7건(완료 6, 진행 중 1)

① 00구 00아파트 체육시설관련 감사청구

감사개요

- 청구일자 : 2006. 2. 17
- 청구인 : 00구 00동00 아파트 106-1702 000외 262인
- 청구요지
 - 00구청은 인허가없이 00아파트단지내 찜질방, 샤워시설을 설치·운영케 하였고, 동 시설은 비상탈출구도 없고 지하의 저수조 및 전기시설은 식수오염 및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에도 소방서의 소방검열도 없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 구청에서 아파트 관리규약 변경건에 대하여 결재시 인근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을 참고하지 않았으며, 아파트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의 업무추진비가 과다책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부당징수에 대해 감사를 청구함
- 대상기관 : 00구청

조치결과

- '06.3.16 『주민감사청구 취하원』 접수·종결 처리

② 00구의회 예산집행 관련 감사청구

□ 감사개요

- 청 구 일 : 2006. 2. 24
- 청 구 인 : 00구 00동 131 00파크 206-204 000 외 243인
- 청구내용
 - 00구 의회의원들이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의원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지출증빙 서류도 없이 지출하는 등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요망함
- 감사기간 : 2006. 4. 24 ~ 4. 28(5일간)
- 감사대상 : 00구의회(사무국)
- 감사주관 : 000 시민감사관

□ 감사실시 결과

1. 의장단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 이용

- 단란주점 출입은 000 의장이 총 25차례(5,996천원)에 걸쳐 동료의원, 직능단체, 지역주민 등에게 접대한 것으로
 - 그 중 16회를 이용한 000 단란주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밀폐된 룸이나 접대여성이 없는 일반 카페 수준의 단란주점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란주점 출입이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 00구의회는 감사일 현재까지 클린카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지출증빙서에 접대 대상과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 00구 '06. 7. 1부터 클린카드제 시행

➔ **유형주점 출입자제 클린카드제 시행 및 접대대상 기재토록 시정**

2.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로 私的인 선물 구입

- 의장단이 명절 및 국·내외 연수 시 업무추진비로 선물을 구매하여 동료의원등에게 선물(20건, 18,543천원)한 것으로,
 - 의장단이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명절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선물을 구매하여 동료의원 등에 선물한 것이 관례라고 하는 주장을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를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로 국·내외 연수시 선물을 구입하여 동료의원 등에 선물하는 것은 부당한 집행이라고 판단됨
- ➔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선물토록하고 증빙서류에 용도와 배부내역을 정확히 명기하고,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로 선물구매는 금지하도록 시정**

3. 관광성 국·내외 연수 시행

- 해외연수는 00의 지방의회 운영실태를 비교시찰 할 목적으로 5박6일간 의원 24명, 수행직원 13명이 56,320천원(여비 47,660천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9,060천원)으로 000의회 및 00시청 등을 방문하였으나,
 - 방문할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현지 여행사의 소개로 방문도시의 현황 정도를 소개 받는 수준이었으며, 귀국 보고서도 14쪽의 여행 기행문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수행직원도 특별한 임무 없이 과다 인원으로 수행하였음
- ➔ **해외연수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연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연수진행에 필요한 직원만 수행토록 시정**

4.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에도 기재하지 않았고(18건, 11,224천원)
- 일상경비(업무추진비)는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국·내외 연수비용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간이영수증으로 집행(6회 46,993천원)하였으며, 일부는 영수증 없이 지출(6건 2,171천원)한 것으로 확인됨

➔ 회계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문책 및 관련지침을 준수토록 시정

5. 행정정보 미공개 부당

- 00구의회는 '06.2.21 주민 000이 전화로 청구한 00구의회 예산집행 관련 증빙자료 재차열람에 대하여 '지방선거가 임박하여 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체 비공개 결정하고, 전화로만 비공개 사유를 통지한 것은 행정정보공개 절차를 소홀히 한 것임

➔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문책 및 관련지침을 준수토록 시정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 : 4건
 -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 철저
 - 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교육 강화
 - 의회위원의 의정활동경비 예산집행 교육 철저
 - 클린(Clean)법인카드제 가입 철저
- 재정상 조치 : 없음
- 신분상 조치 : 5명(훈계 5)
- 제도개선 검토과제 : 1건
 -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표방안 검토(시민협력과)

③ 000구 00동 0000 재건축사업 관련 감사청구

감사개요

- 청 구 인 : 00구 00동 358-2 00아파트 101-602 000 외 210인
- 청구일시 : 2006. 3. 24
- 청구요지
 - 000구 00동 00연립재건축사업 주택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 등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가처리 하였고, 관계 공무원들의 민원처리가 부당하여 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함
- 청구내용
 - 소유권 미확보(단독주택 매입 미완료)등 조건이 미비함에도 조합설립인가
 - 조합원 등의 미비(소유권 미확보), 용적률(200%) 초과, 주택공급비율 위반, 건축심의 절차상 문제 있는데도 사업시행(변경)인가
 - 경쟁 입찰로 시공사 선정하지 않고 특정 시공사 선정
 - 관할구청 공무원의 역할부재, 감독 소홀, 업무처리 부당
- 감사기간 : 2006. 5. 22 ~ 5. 26(5일간)
- 감사대상 : 000구청
- 감사주관 : 000 시민감사관

조치결과

- '06.6.23 『주민감사청구 취하원』 접수·종결 처리

4 00구 00동 제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관련 감사청구

□ 청구개요

- 청구인 : 00구 00동 34-4 00맨션 402호 000
- 접수일시 : 2006. 4. 26
- 청구요지
 - 00구 00동 제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06. 4.17 서울시에 제출한 제2주택 재개발구역 변경요청 건은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처리하려는 사항이므로 시정이 요구됨
- 청구내용
 - 00 2-1구역의 정형화는 양 지역(환지지역, 뉴타운 지역)의 도정법 적용에 기준의 차이가 심하여 관리처분 계획 수립이 어렵고, 재산가치 평가 차이로 분담금 차이가 심하므로 양분하여 별도로 사업추진 요망
 - 기존 도로를 폐지하고 단지 내 도로신설 승인은 인접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공익에 현저히 반하므로 거여 2-1구역의 정형화 추진을 중지하고, 최초 원안대로 사업 추진하여야 함

□ 조치결과

- 청구인수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사항이 아니므로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결과 '각하'결정

⑤ 00구 00단지 아파트재건축 관련 감사청구

□ 청구개요

- 청구인 : 00구 00동 00(아) 202동 401호 000
- 접수일시 : 2006. 7. 25
- 청구요지
 -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배하여 00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사업계획 변경을 부당하게 승인한 00구청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 공무원의 징계 요구
- 청구내용
 - ① 00구청은 재건축조합의 불법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소홀
 - 총회 미 참석 조합원들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아 찬성 80%이상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00구청은 묵인하였음.
 - 재건축 조합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민원을 방치하였음.
 - ② 조합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변경허가 한 것은 직무유기 및 직원남용
 - 지하주차장 면적확장
 - 종합상가의 층고 및 부대시설 상향 변경하는 대신 아파트 마감재와 시공사양 품목 70여 가지를 하향하거나 삭제
- 감사기간 : 2006. 11. 6 ~ 11. 15(10일간)
- 감사대상 : 00구 지역개발과
- 감사주관 : 000 시민감사관

□ 감사실시 결과

1. 재건축아파트 사업계획변경(재료변경)사항 검토 소홀

- 재건축조합에서 재료변경(삭제 또는 품질하향)을 위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정관 제18조 제2호 및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결의를 받아야 함에도,
 - '04.11.24 사업계획변경내역이 기재된 임시총회 회의자료에 누락된 내·외장재 재료변경사항이 설계도서에 나타나는 등 설계변경내역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임시총회와 서면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음. (총 38건으로 그 중 동등이상 4건, 변경없거나 심의조건이행 12건, 가격하향 또는 삭제된 것 17건, 판단불가 5건이 발견되었음.)
- ➔ '05.3.28 사업계획변경관련 임시총회 및 서면동의시 사업계획변경내역 미고지 부분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

2. 사업계획변경시 설계도서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감리자 검토 없이 처리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및 구 동법시행령 제34조의6 제1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동법 제33조의6 제2항제4호 및 구 동법시행령 제34조의7 제2호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로 되어있으므로 재건축사업계획변경승인시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감리자의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함에도,
- '03.2.8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사업주체의 감리자 지정요청, 00구청의 감리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05.3.23 감리자를 지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였고, 조합으로부터 접수된 사업계획변경 민원서류의 처리기한이 '05.4.9인데도 사업계획변경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감리자 검토 없는 민원서류를 '05.3.28일 승인처리하였으며

➔ 재건축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시 감리자 검토여부 등 확인 철저

3. 중요업무인 재건축사업계획변경업무를 사무분장 없이 처리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00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분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업무는 기술적 검토와 전문성이 필요한 중요 업무로서 00직공무원인 000로 사무분장되어 있는데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00직 공무원에게 '05.3.28 00단지 재건축사업 사업계획변경 업무를 사무분장 없이 처리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재건축사업계획변경업무 등 중요업무는 업무분장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4. 00단지 재건축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처리 부적정

- 재건축조합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정관 제18조 제2호 및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이상 찬성 결의를 받아야 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 '05.12.19일 승인 처리한 00단지 재건축사업 사업계획변경은 조합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승인처분을 해야 할 사항을 신고처리 하는 등 위법하게 사업계획변경을 처리하였음.

➔ '05.12.19 사업계획변경 신고 처리된 사항으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향후 승인처분 가능여부 검토 후 조치)

5. 00단지 재건축조합 사업계획변경 관련 질의회신 부적정

- 서울시 00과 에서는 '05.2.17 00구 00동 거주 000로부터 재건축조합 사업계획변경과 관련한 질의를 처리하면서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44조제3항, 동법시행 규칙 제20조3항에 의하면,
 - 사업계획변경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주택조합(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에 일반 분양자가 있는 경우에 조합원 5분의4이상의 동의와 일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05.2.19 법령질의 사항을 회신하면서 사업주체인 주택조합을 지역 조합과 직장조합으로 한정하여 잘못 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 사업계획변경 시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지역·직장조합은 사업계획승인시점으로 하고, 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조합원 분양계약 시점”으로 한다고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질의회신

➔ 재건축조합 사업계획변경 관련 법령 질의회신사항 시정회신

□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 : 5건

- '05.3.28 사업계획변경관련 임시총회 및 서면동의 시 사업계획변경내역 미고지 부분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
- 재건축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시 감리자 검토여부 확인 등 철저
- 사업계획변경업무 등 중요업무는 업무분장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 '05.12.19 사업계획변경 신고 처리된 사항으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향후 승인처분 가능여부 검토 후 조치)
- 재건축조합 사업계획변경 관련 법령 질의회신사항 시정회신

○ 재정상 조치 : 없음

○ 신분상 조치 : 2명(인사자료통보 1, 주의 1)

○ 제도개선 검토과제 : 없음

⑥ 00구 00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감사청구

청구개요

- 청구인 : 00구 00동 00(아) 109동 1004호 000
- 접수일시 : 2006. 8. 31
- 청구요지
 - 000구 00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 인가를 잘못하여 재산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어 감사 청구
- 청구내용
 - ① '91.8.24 관리처분을 위한 공람 공고 시 감정평가액이 과소평가되어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수용하지 않고 인가함
 - ② 승소판결 내용을 관리처분에 반영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았음.
 - ③ 현재 관리처분 변경인가('94.4)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관리처분 잘못에 대한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하였는데 반영하지 않았음.
 - ④ 조합장 및 임원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이 검찰에 구속되어 재판 진행 중)

조치결과

- 청구인수 요건이 미달되었고, 00 제1구역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이므로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결과 '각하' 결정

7 00구 공영주차장 민간자본유치사업 관련 감사청구

감사개요

- 청구인 : 서울시 00구 00동 50-5 000 104-1002
- 청구일시 : 2006. 10. 11
- 청구요지
 - 00구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행한 민간자본유치 주차 시설 설치·운영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과는 무관하며, 제반규정을 따르지 아니 하는 등 주민의 의사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어 감사청구
- 청구내용
 - ① 00구는 관련 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00구유재산관리조례' 를 준수 하였는지, 00구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② 00구의회에 관련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었으며, 주민설명회를 5회 이상 실시하겠다는 것도 이행하지 않는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음.
 - ③ 공영주차장 입체화에 대한 주민의사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렴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음
 - ④ 공영주차장 민간사업자 평가기준 및 선정과정에 대하여 감사요망
 - ⑤ 00동 공영주차장 건축 관련사항 감사요망
 - ⑥ 민간자본에 의한 공영주차장 개발 사업의 수익성 검토 요망
 - ⑦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 후 체결되는 민간사업협약에 주민의견이 반영 되었는지 여부

향후 조치사항

- '07.1.15 감사자문위원회 서면심의 개최(조건부 수리)
- '07.1.22 감사청구인 보정 명부 접수(95명)
- '07.1.22~2.4 보정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중
- '07.2월초 현지감사 실시 예정

시민감사청구사항 처리 - 4건(완료 4)

① 00구 소재 시유지 매각 관련 감사청구

□ 감사개요

- 청 구 인 : 00구청장
- 청구일시 : 2006. 1. 19
- 청구요지
 - 서울시가 2002.2.14일 00구 00아파트 주민들이 보행통로로 사용하여 왔던 00동 370-1외 3개 필지 매각에 대하여
 - ① 00아파트의 주민들에게 통보나 매입의사를 묻지 않고 00학원에 매각한 것이 매각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 ② 매각 당시 특혜가 있었는 지 여부
 - ③ 주민과의 대화 시 요청사항(2006.2.7 000 시민감사관)
 - 주민통로를 폐쇄하고 건축 허가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
- 감사기간 : 2006. 2. 6 ~ 2. 10(5일간)
- 감사대상 : 00사업본부(00사업소)
- 감사주관 : 000 시민감사관

감사결과

1. 시유지 매각절차 적법성 및 매각 시 특혜 여부

- 동 토지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001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에서 매각 결정한 시유재산으로,
-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 기점용 필지인 370-27호는 인접지(370번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 그 외 3필지(370-1외)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한 것으로,
- 공개 매각 시 매각사항을 아파트 주민에게 알리거나 매입의사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매각절차의 하자나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 건축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주민요청 사항)

- 건축주가 통행로 확보 등 건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결 협조를 00구청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 : 1건
 - 민원업무 추진 철저
- 재정상 조치 : 없음
- 신분상 조치 : 없음
- 제도개선 검토과제 : 1건
 - 건축허가 전 주민의견 청취제도 시행

② 00유통단지 종교시설 배정 관련 감사청구

감사개요

- 청 구 인 : 00구 00동 223번지 000 외 285명
- 청구일시 : 2006. 3. 13
- 청구요지
 - 서울시가 개발하고 있는 00 유통단지내에서 16년(1989년 등기) 동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00교회는 새로이 조성되는 유통단지 내에서 종교활동을 지속하고자 관계기관에 부지 배정을 위한 문의, 필요한 행정절차 그리고 면담을 가져왔으나 상업지역인 유통단지라는 이유로 주거용 보상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는 부당한 행정행위임
- 청구사항
 - 유통단지내의 종교부지 배정이 불가한 사유
 -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 요망

조치결과

- 관련법규에 유통단지 내 종교시설에 대해 종교 부지를 확보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본 감사청구사항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설치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시민감사청구 대상사무인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사청구 ‘각하’ 결정

③ 00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련 감사청구

□ 감사개요

- 청 구 인 : 00구 00동 711 00A 105-704 000 외 243명
- 청구일시 : 2006. 4. 7
- 청구요지
 - 00자원회수시설(00구 00동 4-5)운영에 있어 서울시(00과)의 관리·감독 부적정과 소각장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어 시민감사 청구
- 청구사항
 - 불법적 쓰레기 반입 목인(관리감독 직무유지)
 - 시간외 쓰레기 반입 목인
 - 종량제쓰레기 봉투 미사용의 불법허용
 - 서울사랑시민상 환경부분 수상에 대한 의혹
 - 공청회 개최에 있어 절차를 무시한 소각장 공동이용 추진
 - 다이옥신 연속채집장치의 고가구입 설치 등 입찰비리 의혹
 - 소각장 운영 정보 미공개 및 운영 법규 위반
- 감사기간 : 2006. 5. 15 ~ 5. 19(5일간)
- 감사대상 : 00과, 00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업체
- 감사주관 : 000 시민감사관

□ 감사실시 결과

1.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민감시 시간외 반입

- 주민감시 시간(04~13시)외 반입한 쓰레기는 총 1,049회 약 770톤이며, 이중 00재활용공사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645톤을 반입
-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위탁처리업체에 지불하였고 그 업체는 00구청에 반입 수수료를 납부

➔ 감시시간외 반입은 협약 위반이며, 봉투가격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였으므로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2. 2005 서울사랑시민상 환경부문 수상 및 시상금 집행

- 00주민지원협의체는 소각장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하는 등의 공로로 00 과장이 추천하여 공정한 심의를 거쳐 장려상을 수상하였음

※ 시상금 300만원 중 240만원은 대의원 식비로 지불

➔ 공적심의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상, 시상금 사용은 수상자의 임의적 사항임

3. 공동이용에 대한 공청회 미 개최 및 주민의사 수렴

- 서울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요청에 의하여 2006.3.6 2차례에 200여명의 주민이 참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공청회는 개최하지 아니하였음
- '06.1.2 주민지원협의체는 공동이용협약(안)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를 '06.3.12(1차), 3.27(2차) 실시하였으나 반대 주민들에 의해 무산되었음

➔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의사를 수렴하도록 권고

4.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집장치 구매에 대한 입찰비리 의혹

- 일본 내에서의 가격은 환율의 착오와 제작업체가 정책적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한 일본내에서만 통용되는 가격임을 확인하였음
- 구입가격에 대하여는 상업송장, 수입면장과 가격정산서를 확인한 바, 비리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 기술심사위원으로 협의체 대표 2인이 참여한 것과 심사기준을 심사 당일 변경한 것은 부적절하며, 협의체 대표가 심의에 영향을 준만한 행위는 없었다고 참여 외부전문가 4인은 응답

➔ **주요물품의 구매에 대한 입찰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달구매하도록 권고**

5. 운영정보 미공개 및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 소각시설 운전일지는 수탁기관에서 상시 비치하므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각로의 예열온도 위반이나 소방서의 소방점검 시 법규를 위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6. 서울시가 주관하는 투명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

- 주민들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규정인 ‘소각장 대책위원회 규정’에 의거 요청한 임시총회를 미 개최한 것은 자치기구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향후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함

□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 : 5건
 - 00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공청회·주민설명회 개최(권고)
 - 주민지원협의체 확대 재구성(권고)
 - 물품구매의 적정한 예산 편성 및 계약업무 시행(시정)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시정)
 - 주민편익시설 이용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검토)

- 재정상 조치 : 없음

- 신분상 조치 : 3명(지도감독업무 소홀 공무원 '주의')

- 제도개선 검토과제 : 3건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 건의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세부사항 규정을 위한 조례 개정(검토)
 - 민간위탁비 지급 방법을 개선하도록 위탁협약서를 개정(시정)

④ 서울시 불법주차 견인사업 관련 감사청구

□ 감사개요

- 청구인 : 00구 00(아) 103-1509 000 외 354명
- 청구일시 : 2006. 7. 19
- 청구요지
 - 서울시는 '01.12월 대형차량 견인을 위하여 00특수운수(주)를 설립 시켰으나 2005년부터 당초 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최근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 견인사업에 참여하여 회사가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음
- 청구내용
 - ① 2001년 불법주차 대형차량 견인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설립한 대형차량 견인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한 책임
 - ②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 불법주차 견인업무 수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 ③ 00구청 등의 견인대행업체 지정의 위법성과 서울시 지도감독 책임
 - ④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의 견인료 40,000원(소형차량) 징수의 적법성
 - ⑤ 견인료 민원을 무성의 하게 답변하거나 묵살한 담당 공무원의 책임
 - ⑥ 견인운송협회가 제출한 견인료 원가분석용역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감사기간 : 2006. 8. 24 ~ 8. 30(5일간)
- 감사대상 : 00과, 00단속반(단속현장, 보관소)
- 감사주관 : 000 시민감사관

□ 감 사 결 과

1.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방침 불이행

- 서울시의 주·정차업무 단속방침 수립 시 마다 동 협회에 시의 방침 등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
 - ➔ 2005년 이후 단속 및 견인업무처리방침의 변경으로 견인실적이 감소한 것은 대형차량 견인만이 아닌 전체 차량견인건수가 감소한 것으로서 00운수(주)에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

2.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불법주차 견인업무 수행의 적법성 여부

-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치구로부터 위탁 받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관리자로 적법하며, 구청 단속공무원이 동승하여 단속한다는 내용은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를 부인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였음.
-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관리만을 대행할 경우 견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확인됨.
 - ➔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는 대행법인으로 수행하게 하는 법령의 취지와 민간경제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00구의 견인대행업체 지정의 적법성 여부

- 견인 등 대행법인의 지정업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임
 - ➔ 견인대행업체 지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정한 것으로 판단됨.

4. 민원처리 부당 여부 및 관련공무원의 책임소재 규명

- 견인운송협회가 제출한 견인료 원가분석용역 반영 여부
 - 서울시에서 2003.4.3 견인료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시의회는 시민의 부담증가 등을 이유로 상정치 아니하여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이 아님.
 - ➔ **물가인상, 임금인상 등을 고려해 볼 때 견인료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서울시에서 원가분석 용역을 거쳐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
- 민원업무 처리 적정 여부
 - 견인료 부가가치세 미납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한 회신내용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민원인에게 내용상의 의미는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감사 중에 해당부서에 주의 촉구

□ 조 치 내 용

- 행정상 조치 : 4건
 -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사후관리 철저(자치구 시달)
 - 주차위반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현실화 방안 마련(권고)
 - 주차위반 대형차량 단속 및 견인·보관 업무체계 개선(권고)
 -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업무 범위 조정(권고)
- 재정상 조치 : 없음
- 신분상 조치 : 없음
- 제도개선 검토과제 : 1건
 -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견인조치사항에 관한 법령 개정(건의)